

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4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26.
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이유

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승인을 받고자 합니다.

2. 주요골자

가. 세입·세출결산

1) 일반회계

- 세입결산액 : 4,563,109,013,016원
- 세출결산액 : 4,148,434,090,608원
- 잉 여 금 : 414,674,922,408원

(이월액 : 234,284,484,837원, 보조금 실제반납금 : 39,423,609,646원

지정재원잉여금 : 617,500,000원, 순세계잉여금 : 140,349,327,925원)

2) 공기업 특별회계 :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2

- 세입결산액 : 338,026,254,879원
- 세출결산액 : 254,720,869,624원
- 잉 여 금 : 83,305,385,255원

(이월액 : 65,221,744,230원, 보조금 실제반납금 : 547,001,510원

순세계잉여금 : 17,536,639,515원)

3) 기타 특별회계 : 경륜사업특별회계 외 18

- 세입결산액 : 306,035,905,033원
- 세출결산액 : 259,141,803,504원
- 잉 여 금 : 46,894,101,529원
(이월액 : 24,745,843,320원, 보조금 실제반납금 : 340,879,691원,
순세계잉여금 : 21,807,378,518원)

나. 기금결산

1)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5

- 전년도말 조성액 : 475,965,840,006원
- 당해연도 조성액 : 66,843,681,178원
- 당해연도 사용액 : 116,169,949,104원
- 당해연도말 조성액 : 426,639,572,080원

다. 재무제표

1) 총 자 산

- 2025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20,681,416,809,056원으로
2024회계연도말 20,604,520,921,890원에 비하여 76,895,887,166원이 증가

2) 총 부 채

- 2025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547,991,564,243원으로
2024회계연도말 624,710,641,052원에 비하여 76,719,076,809원이 감소

3) 순 자 산(총자산-총부채)

- 2025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순자산은 20,133,425,244,813원으로
2024회계연도말 19,979,810,280,838원에 비하여 153,614,963,975원이 증가

4) 재정운영결과(비용-수익)

- 2025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재정운영차액은 (50,731,013,233)원으로
2024회계연도말 (46,293,471,525)원에 비하여 4,437,541,708원이 감소

관 련 법 규

지 방 자 치 법 제150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제82조(결산 승인)

- ①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.

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

-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지 방 회 계 법 시 행 령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창원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3조 (선임방법 및 절차)

-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 중 2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- ③ 위원은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에 따른다.
-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7조 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

-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
 1. 결산개요
 2. 세입·세출의 결산
 3. 재무제표
 4. 성과보고서
 5. 결산서의 첨부서류
 6. 금고의 결산
- 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,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.

※ 기 타(별책)

1. 2025회계연도 창원시 결산검사 의견서 70부
2. 2025회계연도 결산서, 결산서 첨부서류, 성과보고서 각 70부
3. 2025회계연도 공기업(상수도사업, 하수도사업, 주택건설사업) 특별회계 결산서 각 70부